

예천군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 조례(안) 예고

「예천군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예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0. 9. 21

예천군의회의장



1. 제정이유

- 군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주민참여포인트제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예천군과 군민이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군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활성화 및 행정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증대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나. 포인트 부여대상 및 부여기준(안 제4조)

- 포인트 부여는 오프라인 및 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참여 포함

다. 인센티브 신청 및 지급 등(안 제6조)

- 인센티브는 참여자의 신청에 의해 지급하며 누적 포인트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예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고 지급된 포인트는 즉시 소멸됨

- 인센티브 지급은 연2회(1월말, 7월말), 1포인트당 1원으로 환산하여 5,000원 단위로 지급
- 인센티브로 지급되지 않은 포인트는 익년도로 이월

라. 포인트 부여 제외(안 제7조)

- 군 소속 공무원, 예천군의회 의원, 별도의 수당 대가 및 그 밖의 이익을 받고 군정에 참여하는 사람

3. 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
- 나.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 다. 예산조치 : 추후반영
- 라. 규제심사 : 해당없음
- 마. 입법예고결과 :
- 바.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5.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주 소 : 예천군의회 (우 36826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 (☎054- 650- 6407, FAX 054- 650- 6409)
- 전자우편(이메일) : syyh2000@korea.kr

예천군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주민참여포인트제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예천군과 주민이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참여포인트제"란 군정의 의사형성 단계부터 집행 단계까지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참여 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2. "포인트"란 군정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부여하는 점수를 말한다.
3. "인센티브"란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참여자에게 누적 포인트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을 말한다.
4. "참여자"란 주민참여포인트제에 참여한 사람을 말한다.
5. "관리부서"란 주민참여포인트제를 총괄하여 관리·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사업부서"란 포인트 부서대상을 소관하는 군 본청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군정에 참여하는 주민의 연령, 성별, 주소지 등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4조(포인트 부여대상 및 부여기준) ① 포인트 부여는 오프라인 및 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참여를 포함한다.

② 포인트 부여대상 및 부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포인트 부여는 별지 제1호서식의 주민참여포인트 부여 신청서에 따른 참여자의 신청에 의하여 부여한다.

④ 참여자 1인당 부여하는 포인트는 연간 200,000포인트로 제한한다.

제5조(포인트 관리) 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참여포인트제의 운영·관리 및 포인트 열람 등 참여자의 편의를 위해 주민참여포인트제 관리 시스템을 운용한다.

② 사업부서의 장은 참여자 및 포인트 발생내역을 관리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의 통보에 따라 참여자에 대해 포인트를 부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포인트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인센티브 신청 및 지급 등) ① 군수는 누적 포인트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인센티브는 참여자의 신청에 의해 지급하며, 지급기준과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센티브 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의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에 따라 참여자가 온라인 및 방문 등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2. 인센티브 지급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2회(1월말, 7월말) 지급한다.

3. 인센티브는 1포인트당 1원으로 환산하여 5,000원 단위로 지급한다.

4. 인센티브로 지급되지 않은 포인트는 익년도로 이월 할 수 있다.

③ 인센티브는 예천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된 포인트는 즉시 소멸된다.

제7조(포인트 부여 제외) 다음 각 호의 사람은 포인트 부여 및 인센티브 지급에서 제외한다

1. 군 소속 공무원

2. 예천군의회 의원

3. 별도의 수당, 대가 및 그 밖의 이익을 받고 군정에 참여하는 사람

제8조(포인트 소멸기준) 5년 동안 포인트가 누적되지 아니하는 경우 포인트는 모두 소멸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주민참여 포인트 부여대상 및 부여기준(제4조 관련)

포인트 부여대상		포 인 트 부여기준 1회당(점)	비 고
구분	내용		
주민참여 예산제	• 예산편성 의견제출	1,000	공익성 있는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낭비	• 예산낭비사례신고	2,000	
예산절감	• 예산절감제안	2,000	
제안마당	• 제안제도 접수 • 군 홈페이지 접수	1,000	아이디어실시제안, 실질적 군민불편사항이 개선된 경우 등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 접수	1,000	
군정시책	• 군정 아이디어 및 기타 개선사항 건의 등 군정 시책 참여	2,000	

※ 단순 건의사항 및 포인트 획득만을 위한 중복·반복적 참여 시 포인트
부여에서 제외될 수 있음

주민참여포인트 부여 신청서

신청자	성명	자택전화	
		휴대전화	
	주소		
참여 일시		신청 포인트(점)	
참여 내용			

「예천군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주민참여
포인트 부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예천군 홈페이지 등 신청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청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별지 제2호서식】

주민참여포인트 개인별 관리대장

[illegible]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

신청자	성명	자택전화	
		휴대전화	
	주소		
누적 포인트		사용 포인트 (금회)	

「예천군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예천군 홈페이지 등 신청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청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참고자료>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